

# 함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 규정

2021 개정 2021. 04. 29.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근거하여 함현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학교”란 본교 함현초등학교를 말한다.
- “학생”이란 함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제4조(책무)

-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학교에서 체벌 및 폭언은 금지된다.
-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며,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구에 의한 체벌
-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언어폭력
-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제8조(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兆를 미리 알았을 경우나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학교(담임 등)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르며, 별도의 학교 폭력 대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제9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

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지 물품과 검사 등)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흥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항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 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물을 검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생에게 목적과 이유를 밝힌 후 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에서 소지물을 검사할 수 있다.
9. 소지품 검사 시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10.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11조(학습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계획에 준하고, 가급적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학생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휴식을 취할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학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다양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의 재능, 특기, 소질을 신장하고 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선도함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 활동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포상으로 아동의 특성, 개성 소질이 존중되도록 한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제15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진다. 단, 비호감적인 용모(너무 과한 염색,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등)는 제한할 수 있다.
2.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6조(사생활의 자유)

1. 학생은 부당한 한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타협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소지품은 제한할 수 있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및 입문기 아동인 1~2학년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5. 학교는 타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7조(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자유)

학생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제18조(휴대전화 사용 교육 및 과도한 제한 및 압수 지양)

1. 학교 등교 시 교문입구에서 전원을 끄고, 하교 시 교문 밖에서 전원을 켜도록 하며,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급 재량으로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등교 시 일체 보관 후 하교 시 돌려 줄 수 있다.)
2. 휴대 전화 사용이 꼭 필요할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3. 위의 규칙을 어길 시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보관 후 당일 하교 시에 되돌려 줄 수 있다.

##### 제19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학교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가 있다.
2.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21조(건전한 사이버생활을 누릴 권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22조(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 또는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6.(신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집회의 시간·장소는 학습권 보호와 학생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24조(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26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7조(보호자의 의무)**

1.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2. 학생들의 인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가 준비물 전달, 하교보호, 기타 상담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들리 방문증을 패용하고 교실에 입실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8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to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9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정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

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1조(급식에 대한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직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2조(건강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33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신설)(학생생활교육)

1.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학생을 통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 제9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3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학생생활교育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관련부장, 학년부장, 학교폭력담당교사로 구성한다.
2. 학생생활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자세한 사항은 함현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10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3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3.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3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학교와 학교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교와 학교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4. 학교와 학교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학교와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 제3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홍보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홍보)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1.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한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홍보 운영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교원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2조(보호자 교육)

-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경기도교육감이 배포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제43조(인권실태조사)

학교장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44조(실천계획의 작성)

-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5조(학생참여)

학교장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6조(지침 이행)

학교장은 교육감이 마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7조(주민활동 지원)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제48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경기도교육청)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장 제44조에 의한다.

## 제5장 교권보호

#### 제49조(교권보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제6장 보칙

#### 제50조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제·개정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1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재적 교원 1/3 이상의 요청
-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
- 보호자의 1/3 이상의 요청
- 학교장의 요청

#### 제 52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한다.
- 의견수렴 과정은 학생은 학생자치활동(학급회의, 학생회 등),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교직원은 설문조사로 의견을 수렴한다.

#### **제53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54조(교육과 연수)**

1. 학교장은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사실을 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한다.

#### **제5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56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